

위임약정서

주민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승인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.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이에 동의하시면 이름과 인적사항을 적은 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사건

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및 효력정지신청 등

2. 수임인 (소송을 원하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 등의 업무를 처리할 자를 말한다)

월성원자력수명연장 반대 국민소송대리인단

3. 수권(受權)사항

- (1) 1심, 2심, 3심 소송행위(소 취하, 화해, 조정, 청구의 포기, 상소의 제기 등 포함)
- (2)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신청행위
- (3) 집행정지신청행위
- (4) 가처분신청행위
- (5) 헌법 소송
- (6) 복대리인의 선임행위

4. 기타

가. 소송관련사항은 관련 홈페이지 혹은 등록하신 e-mail 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.

나. 이메일 주소의 변동이나 연락처 변동 시, 02-735-7000(환경운동연합)

혹은 nonuke@kfem.or.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성명(본인) : (인)

부: (인)

주민등록번호 :

주소 :

연락처 :

이메일주소 :

모: (인)

주민등록번호 :

주소 :

연락처 :

이메일주소 :

* 소송에 관련한 귀하의 정보는 변호사법 제26조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며, 소송진행을 위해 서만 사용됩니다.